

관리번호	지원대상	지원분야	지원내용	과제구분	완료여부
15	직원	주택마련 해결	주택 우선분양	규정 개정	완료

세부 지원내용		관련근거	일자	추진상황	비고
<p>○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</p> <p>-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불안 문제 해소</p> <p>- 청약통장가입, 주택건설지역 등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분양주택 공급</p>		<p>주택공급규칙 제3조제2항제15호</p> <p>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제2항</p>	04.10.22	<p>○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·시행('04.10.22)</p> <p>-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근거 마련(이전기관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추진)</p> <p>- 청약통장,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분양주택 공급 가능</p>	
소관부처	국토교통부		06.3.14~ 07.1.11	<p>○ 혁신도시특별법령 제정 추진</p> <p>- 혁신도시특별법 공포(07.1.11)</p> <p>* 이주직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가능</p>	
담당부서	주택기금과		11.09.16	<p>○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정</p> <p>* 이주직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(특별공급) 가능</p>	
			12.3.22	<p>○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</p> <p>- 이주직원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(특별공급) 비율 확대 시행(50%→70%)</p>	

		13.11.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- 이주직원에 대하여 숙소 및 사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기관에 대하여 특별분양 허용 	
		13.12.3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- 이주직원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(특별공급) 비율 조정 (70~100%→50~70%) 	
		14.7.2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- 이주직원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(특별공급) 기한을 '19.12.31까지 설정 	